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인천지부

400-03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6(라이프상가 3동 3층) TEL 032-890-9024, FAX 032-890-9027

업 무 과

차장 : 김 성 건

담당자 : 남 궁 홍

문서번호 : 인천업무 제 2336 호

시행일자 : 2014. 12. 29

수 신 : 각 조합원사

참 조 : 대표이사

선결		지시		
접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수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1,2종차량 기본분담금 조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제조합에서는 담보 종목간 손해율 편차가 심하여 현재 수준의 연간 기본 분담금을 유지하는 전제로 1,2종차량 담보 종목별 기본분담금과 특별요율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분담금관리를 기 하고져 본부 기획 제4000호(2014.12.11.) “기본분담금 조정 통보” 로 시달 받아 불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며,

3. 금번 기본분담금 조정은 담보 종목별 손해율 편차 해소를 위하여 기본분담금 조정이 이루어지는바, 일반공제 분담금 상향조정에 따른 기본요율 차량은 큰 변동이 없으나, 일부(고요율)차량의 불가피한 분담금 상승이 예상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인천지부의 현행과 같은 저렴한 분담금【경영성과요율 -7%, 특별조치(책임 -15%, 일반-5%)】기조를 지속적으로 적용 받으려면 조합원 및 차량관리자(차주, 운전자)분들께서 적극적인 사고예방에 주력하시어 손해율 경감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당 지부는 조합원에 대한 보다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03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6(라이프상가 3동 3층) TEL 032-890-9024, FAX 032-890-9027

업 무 과

차장 : 김 성 건

담당자 : 김 미 숙

※ 붙임 : - 담보 종목별 기본분담금(1,2종차량) 및 특별요율 조정 내용 1부 “끝”

직 인 생 략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인 천 지 부 장

[붙임]

담보 종목별 기본분담금(1,2종차량) 및 특별요율 조정 내용

1. 조정사유

□ 1,2종 차량의 종목별 손해율 편차 증가

구분		종목별			합산
		대인배상 I (책임)	대인배상 II (대인)	대물배상	
공제 평균	1종	79.8%	67.7%	147.2%	102.1%
	2종	81.9%	71.8%	150.0%	103.5%
인천 지부	1종	72.8%	100.4%	228.9%	136.4%
	2종	57.1%	48.1%	230.3%	114.4%

=> 1,2종차량의 손해율 적정선(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공히 대인과 대물 종목 간의 종목별 손해율 편차가 대단히 심화

□ 기본 분담금의 조정 필요성

=> 현행 1,2종 차량 분담금이 조정된지 10년(2002.01.01.)이상 경과되었으며, 그 간의 손해율 변화추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종목간 손해율 편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의 합리화를 위해 조정

※ 국토교통부도 최근 6개 공제조합에 대한 합동점검(2014.09.22. ~ 10.2)시 우리조합 기본분담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 개선 명령 시달

2. 조정요지

가. 조정방식

□ 종목간 손해율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분담금 인상·인하 없이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공제기본분담금 표준요율 100%기준)

※ 특기사항

○ 할인·할증 적용률 100%를 기준으로 책임공제는 인하, 일반공제는 인상하는 금번 분담금 조정방식의 특성에 따라

=> 현재 우리 공제조합은 책임공제 최대 100%, 일반공제는 최대 230%까지 할증이 적용되므로 고요율(100% 초과) 차량의 경우 분담금 일부 증가

=> 지부별 경영성과요율(인천지부 -7%), 특별조치(책임:-15%, 대인·대물:-5%) 적용으로 분담금 변동 액 다소 상이 (1~2%수준범위)

=> 대물보상한도 3억, 4억, 5억 특별조치(대물:-5%) 미적용으로 대물 기본 분담금 변동액 상이 (0.8~1.5수준 범위)

□ 조정방법

1단계 : 종목간 손해율 기준으로 분담금 인상·인하(1차조정)

◇ 종목간(대인 I·II, 대물)손해율이 일정하도록 분담금 재조정

- 종목간 손해율(1종) : 대인 I : 79.8%, 대인 II : 67.7%, 대물:147.2%

- 분담금 조정방식(1종 차량 예시)

종목	현행손해율	조정 손해율	분담금 조정률
대인 I (책임)	79.8%	102.1%	27.5%인하
대인 II (대인)	67.7%	102.1%	44.5%인하
대물	147.2%	102.1%	56.5%인상
소계	102.1%	102.1%	-

2단계 : 현행 대비 인상, 인하분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2차조정)

◇ 1단계 결과에 현행 분담금 대비 차액(대물:112,100원)분을 대물 종목에 반영하여 증감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분담금 조정예시(1종차량)

[공제 기본분담금]

구분		대인(Ⅰ)책임	대인(Ⅱ)대인	대물	합계	비고
현행	분담금	1,057,200	747,300	904,600	2,709,100	
	손해율	79.8%	67.7%	147.2%	102.1%	
분담금조정률		27.5%인하	44.5%인하	56.5%인상		
1차 조정		766,500	414,800	1,415,700	2,597,000	차액 (-112,100) 현행대비
2차 조정		766,500	414,800	1,527,800 (대물에 차액 112,100원 반영)	2,709,100	
최종 공제분담금		766,500	414,800	1,527,800	2,709,100	
차액		△290,700 (27.5%인하)	△332,500 (44.5%인하)	623,200 (68.9%인상)	0	

[인천지부 기본분담금]

구분		대인(Ⅰ)책임	대인(Ⅱ)대인	대물	합계	비고
현행 분담금		898,620	657,620	796,050	2,352,290	
분담금조정률		27.5%인하	44.5%인하	56.5%인상		
최종 공제분담금		651,530	365,020	1,344,460 (대물에 차액 98,640원 반영)	2,361,010	
차액		△247,090 (27.5%인하)	△292,600 (44.5%인하)	548,410 (68.9%인상)	8,720 (0.4%인상)	

※ [별첨] - 적용 요율별 분담금 현황(년간)

=> 특별요율 일부 조정

- 금번 조정으로 책임분담금은 인하, 일반분담금은 인상되어 일반분담금에만 적용하는 특별요율 적용차량의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
- 분담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특별요율 일부 조정(3~5% 인하)
⇒ 견인피견인·기중기(120% → 117%), 위험물(130% → 125%) ⇒ 전차종 적용

나. 조정결과

○ 기본분담금 증감내역(담보별)

(단위:원,%,카고기준)

차 종	담보 종목	현행 (a)		조정 (b)		증감 (c=b-a)		증감률 (c/a)×100	
		공제	인천	공제	인천	공제	인천	공제	인천
1 종	대인 I	1,057,200	898,620	766,500	651,530	△290,700	△247,090	△27.5	△27.5
	대인 II	747,300	657,620	414,800	365,020	△332,500	△292,600	△44.5	△44.5
	대 물	3천만원	840,900	739,990	1,464,100	623,200	548,420	74.1	74.1
		5천만원	885,000	778,800	1,508,200	623,200	548,420	70.4	70.4
		1억원	904,600	796,050	1,527,800	623,200	548,410	68.9	68.9
		2억원	1,013,200	891,620	1,636,400	623,200	548,410	61.5	61.5
		3억원	1,165,200	1,083,640	1,788,400	623,200	579,570	53.5	53.5
		4억원	1,340,000	1,246,200	1,963,200	623,200	579,570	46.5	46.5
		5억원	1,541,000	1,433,130	2,164,200	623,200	579,570	40.4	40.4
2 종	대인 I	839,400	713,490	622,000	528,700	△217,400	△184,790	△25.9	△25.9
	대인 II	563,100	495,530	348,000	306,240	△215,100	△189,290	△38.2	△38.2
	대 물	3천만원	629,000	553,520	1,061,500	432,500	380,600	68.8	68.8
		5천만원	662,000	582,560	1,094,500	432,500	380,600	65.3	65.3
		1억원	676,000	595,500	1,109,200	432,500	380,600	63.9	63.9
		2억원	757,900	666,950	1,190,400	432,500	380,600	57.1	57.1
		3억원	871,600	810,590	1,304,100	432,500	402,220	49.6	49.6
		4억원	1,002,300	932,140	1,434,800	432,500	402,220	43.2	43.2
		5억원	1,152,700	1,072,010	1,585,200	432,500	402,230	37.5	37.5

※ 인천지부 분담금 적용현황 [경영성과요율 : 일반 - 7%, 특별조치: 책임 - 15%, 일반 - 5%]

○ 특별요율 조정에 따른 대물 보상한도별 연간 분담금 증감내역

○ 견인피견인 · 기중기 : 120% → 117%

(단위:%,원)

차종	대 물 보상한도	공제 기본분담금			인천지부 분담금		
		현행	조정	차이	현행	조정	차이
1종	3천만원	2,963,040	2,964,813	1,773	2,575,760	2,586,050	10,290
	5천만원	3,015,960	3,016,410	450	2,622,330	2,631,450	9,120
	1억원	3,039,480	3,039,342	△138	2,643,030	2,651,630	8,600
	2억원	3,169,800	3,166,404	△3,396	2,757,710	2,763,450	5,740
	3억원	3,352,200	3,344,244	△7,956	2,988,130	3,024,570	36,440
	4억원	3,561,960	3,548,760	△13,200	3,183,210	3,214,770	31,560
	5억원	3,803,160	3,783,930	△19,230	3,407,530	3,433,480	25,950
2종	3천만원	2,269,920	2,271,115	1,195	1,972,350	1,979,920	7,570
	5천만원	2,309,520	2,309,725	205	2,007,200	2,013,900	6,700
	1억원	2,327,160	2,326,924	△236	2,022,730	2,029,030	6,300
	2억원	2,424,600	2,421,928	△2,672	2,108,470	2,112,640	4,170
	3억원	2,561,040	2,554,957	△6,083	2,280,840	2,305,990	25,150
	4억원	2,717,880	2,707,876	△10,004	2,426,700	2,448,210	21,510
	5억원	2,898,360	2,883,844	△14,516	2,594,540	2,611,860	17,320

○ 위험물 : 130% → 125%

(단위:%,원)

차종	대 물 보상한도	공제 기본분담금			인천지부 분담금		
		현행	조정	차이	현행	조정	차이
1종	3천만원	3,121,860	3,115,125	△6,735	2,715,520	2,718,320	2,800
	5천만원	3,179,190	3,170,250	△8,940	2,765,970	2,766,830	860
	1억원	3,204,670	3,194,750	△9,920	2,788,390	2,788,390	0
	2억원	3,345,850	3,330,500	△15,350	2,912,630	2,907,960	△4,670
	3억원	3,543,450	3,520,500	△22,950	3,162,260	3,186,830	24,570
	4억원	3,770,690	3,739,000	△31,690	3,373,590	3,390,030	16,440
	5억원	4,031,990	3,990,250	△41,740	3,616,600	3,623,690	7,090
2종	3천만원	2,389,130	2,383,875	△5,255	2,077,260	2,079,150	1,890
	5천만원	2,432,030	2,425,125	△6,905	2,115,010	2,115,450	440
	1억원	2,451,140	2,443,500	△7,640	2,131,820	2,131,620	△200
	2억원	2,556,700	2,545,000	△11,700	2,224,720	2,220,940	△3,780
	3억원	2,704,510	2,687,125	△17,385	2,411,440	2,427,520	16,080
	4억원	2,874,420	2,850,500	△23,920	2,569,460	2,579,460	10,000
	5억원	3,069,940	3,038,500	△31,440	2,751,290	2,754,300	3,010

3. 시행일 : 2015. 03. 01 신규 및 갱신 계약분부터

[별첨]

적용 효율별 분담금 현황(년간)

가. 1종 [카고]

(대물보상한도 1억원 기준 / 단위 : 원, %)

효율	현 행		조 정		차 이			
	공제기본	인천지부	공제기본	인천지부	금액		율	
					공제	인천	공제	인천
60%	1,625,460	1,411,370	1,625,460	1,416,610	-	5,240	-	0.4
70%	1,896,370	1,646,600	1,896,370	1,652,700	-	6,100	-	0.4
80%	2,167,280	1,881,840	2,167,280	1,888,810	-	6,970	-	0.4
90%	2,438,190	2,117,060	2,438,190	2,124,910	-	7,840	-	0.4
100%	2,709,100	2,352,040	2,709,100	2,361,010	-	8,720	-	0.4%
110%	2,874,290	2,497,660	2,903,360	2,531,960	29,070	34,300	1.0%	1.4%
120%	3,039,480	2,643,020	3,097,620	2,702,900	58,140	59,890	1.9%	2.3%
130%	3,204,670	2,788,400	3,291,880	2,873,860	87,210	85,460	2.7%	3.1%
140%	3,369,860	2,933,760	3,486,140	3,044,800	116,280	111,040	3.5%	3.8%
150%	3,535,050	3,079,130	3,680,400	3,215,750	145,350	136,620	4.1%	4.4%
160%	3,700,240	3,224,490	3,874,660	3,386,700	174,420	162,210	4.7%	5.0%
170%	3,865,430	3,369,860	4,068,920	3,557,640	203,490	187,780	5.3%	5.6%
180%	4,030,620	3,515,230	4,263,180	3,728,600	232,560	213,370	5.8%	6.1%
190%	4,195,810	3,660,600	4,457,440	3,899,540	261,630	238,940	6.2%	6.5%
200%	4,361,000	3,805,960	4,651,700	4,070,490	290,700	264,530	6.7%	7.0%
210%	4,526,190	3,951,100	4,845,960	4,241,440	319,770	290,110	7.1%	7.3%
220%	4,691,380	4,096,690	5,040,220	4,412,380	348,840	315,690	7.4%	7.7%
230%	4,856,570	4,242,070	5,234,480	4,583,340	377,910	341,270	7.8%	8.0%

※ 인천지부 분담금 적용현황 [경영성과효율 : 일반 - 7%, 특별조치: 책임 - 15%, 일반 - 5%]

나. 1종 [견인·피견인,기중기]
특별요율 : 120% => 117%

(대물보상한도 1억원 기준 / 단위 : 원, %)

요율	현 행		조 정		차 이			
	공제기본	인천지부	공제기본	인천지부	금액		율	
					공제	인천	공제	인천
60%	1,823,690	1,585,820	1,823,610	1,590,970	△80	5,150	-	0.3
70%	2,127,630	1,850,120	2,127,540	1,856,130	△90	6,010	-	0.3
80%	2,431,590	2,114,430	2,431,480	2,121,300	△110	6,870	-	0.3
90%	2,735,530	2,378,730	2,735,420	2,386,460	△110	7,730	-	0.3
100%	3,039,480	2,643,030	3,039,350	2,651,620	△130	8,590	-	0.3
110%	3,237,710	2,817,480	3,266,630	2,851,630	28,920	34,150	0.9	1.2
120%	3,435,930	2,991,910	3,493,920	3,051,630	57,990	59,720	1.7	2.0
130%	3,634,170	3,166,360	3,721,210	3,251,650	87,040	85,290	2.4	2.7
140%	3,832,390	3,340,790	3,948,490	3,451,660	116,100	110,870	3.0	3.3
150%	4,030,620	3,515,240	4,175,780	3,651,670	145,160	136,430	3.6	3.9
160%	4,228,850	3,689,680	4,403,060	3,851,670	174,210	161,990	4.1	4.4
170%	4,427,070	3,864,120	4,630,340	4,051,680	203,270	187,560	4.6	4.9
180%	4,625,310	4,038,560	4,857,630	4,251,700	232,320	213,140	5.0	5.3
190%	4,823,530	4,213,000	5,084,920	4,451,700	261,390	238,700	5.4	5.7
200%	5,021,760	4,387,440	5,312,200	4,651,710	290,440	264,270	5.8	6.0
210%	5,219,990	4,561,890	5,539,480	4,851,720	319,490	289,830	6.1	6.4
220%	5,418,210	4,736,320	5,766,770	5,051,720	348,560	315,400	6.4	6.7
230%	5,616,450	4,910,770	5,994,060	5,251,740	377,610	340,970	6.7	6.9

※ 인천지부 분담금 적용현황 [경영성과요율 : 일반 - 7%, 특별조치: 책임 - 15%, 일반 - 5%]

다. 1종 [위험물]

특별요율 : 130% => 125%

(대물보상한도 1억원 기준 / 단위 : 원, %)

요율	현, 행		조 정		차 이			
	공제기본	인천지부	공제기본	인천지부	금액		율	
					공제	인천	공제	인천
60%	1,922,800	1,673,040	1,916,850	1,673,040	△5,950	-	-	-
70%	2,243,270	1,951,870	2,236,330	1,951,880	△6,940	10	-	-
80%	2,563,730	2,230,720	2,555,800	2,230,700	△7,930	-20	-	-
90%	2,884,200	2,509,550	2,875,280	2,509,550	△8,920	0	-	-
100%	3,204,670	2,788,390	3,194,750	2,788,390	△9,920	0	-	-
110%	3,419,420	2,977,370	3,437,580	3,002,080	18,160	24,170	0.5	0.8
120%	3,634,170	3,166,340	3,680,400	3,215,770	46,230	49,430	1.3	1.6
130%	3,848,910	3,355,320	3,923,230	3,429,440	74,320	74,120	1.9	2.2
140%	4,063,660	3,544,290	4,166,050	3,643,130	102,390	98,840	2.5	2.8
150%	4,278,410	3,733,280	4,408,880	3,856,820	130,470	123,540	3.0	3.3
160%	4,493,150	3,922,260	4,651,700	4,070,510	158,550	148,250	3.5	3.8
170%	4,707,900	4,111,230	4,894,530	4,284,200	186,630	172,970	4.0	4.2
180%	4,922,640	4,300,210	5,137,350	4,497,870	214,710	197,660	4.4	4.6
190%	5,137,390	4,489,180	5,380,180	4,711,560	242,790	222,380	4.7	5.0
200%	5,352,140	4,678,160	5,623,000	4,925,250	270,860	247,090	5.1	5.3
210%	5,566,890	4,867,140	5,865,830	5,138,940	298,940	271,800	5.4	5.6
220%	5,781,640	5,056,110	6,108,650	5,352,630	327,010	296,520	5.7	5.9
230%	5,996,380	5,245,090	6,351,480	5,566,300	355,100	321,210	5.9	6.1

※ 인천지부 분담금 적용현황 [경영성과요율 : 일반 - 7%, 특별조치: 책임 - 15%, 일반 - 5%]

라. 2종 (카고)

(대물보상한, 1억원 기준 / 단위 : 원, %)

요율	현 행		조 정		차 이			
	공제기본	인천지부	공제기본	인천지부	금액		율	
					공제	인천	공제	인천
60%	1,247,520	1,082,710	1,247,520	1,086,620	-	3,910	-	0.4
70%	1,455,440	1,263,160	1,455,440	1,267,730	-	4,570	-	0.4
80%	1,663,360	1,443,160	1,663,360	1,448,830	-	5,220	-	0.4
90%	1,871,280	1,624,070	1,871,280	1,629,940	-	5,870	-	0.4
100%	2,079,200	1,804,520	2,079,200	1,811,040	-	6,520	-	0.4
110%	2,203,180	1,913,620	2,224,920	1,939,270	21,740	25,650	1.0	1.3
120%	2,327,160	2,022,730	2,370,640	2,067,510	43,480	44,780	1.9	2.2
130%	2,451,140	2,131,830	2,516,360	2,195,740	65,220	63,910	2.7	3.0
140%	2,575,120	2,240,930	2,662,080	2,323,980	86,960	83,050	3.4	3.7
150%	2,699,100	2,350,040	2,807,800	2,452,210	108,700	102,170	4.0	4.3
160%	2,823,080	2,459,140	2,953,520	2,580,440	130,440	121,300	4.6	4.9
170%	2,947,060	2,568,240	3,099,240	2,708,680	152,180	140,440	5.2	5.5
180%	3,071,040	2,677,340	3,244,960	2,836,910	173,920	159,570	5.7	6.0
190%	3,195,020	2,786,450	3,390,680	2,965,150	195,660	178,700	6.1	6.4
200%	3,319,000	2,895,550	3,536,400	3,093,380	217,400	197,830	6.6	6.8
210%	3,442,980	3,004,650	3,682,120	3,221,610	239,140	216,960	6.9	7.2
220%	3,566,960	3,113,760	3,827,840	3,349,850	260,880	236,090	7.3	7.6
230%	3,690,940	3,222,860	3,973,560	3,478,080	282,620	255,220	7.7	7.9

※ 인천지부 분담금 적용현황 [경영성과요율 : 일반 - 7%, 특별조치: 책임 - 15%, 일반 - 5%]

마. 2종 [견인·피견인,기중기]
특별요율 : 120% => 117%

(대물보상한도 1억원 기준 / 단위 : 원, %)

요율	현 행		조 정		차 이			
	공제기본	인천지부	공제기본	인천지부	금액		율	
					공제	인천	공제	인천
60%	1,396,290	1,213,630	1,396,160	1,217,420	△130	3,790	0.3	0.3
70%	1,629,010	1,415,910	1,628,840	1,420,330	△170	4,420	0.3	0.3
80%	1,861,730	1,618,180	1,861,540	1,623,230	△190	5,050	0.3	0.3
90%	2,094,450	1,820,460	2,094,220	1,826,140	△230	5,680	0.3	0.3
100%	2,327,160	2,022,730	2,326,920	2,029,040	△240	6,310	0.3	0.3
110%	2,475,930	2,153,650	2,497,420	2,179,070	21,490	25,420	0.9	1.2
120%	2,624,710	2,284,580	2,667,900	2,329,110	43,190	44,530	1.6	1.9
130%	2,773,490	2,415,500	2,838,400	2,479,140	64,190	63,640	2.3	2.6
140%	2,922,270	2,546,430	3,008,880	2,629,180	86,610	82,750	3.0	3.2
150%	3,071,040	2,677,350	3,179,380	2,779,210	108,340	101,860	3.5	3.8
160%	3,219,810	2,808,270	3,349,880	2,929,240	130,070	120,970	4.0	4.3
170%	3,368,590	2,939,200	3,520,360	3,079,280	151,770	140,080	4.5	4.8
180%	3,517,370	3,070,120	3,690,860	3,229,310	173,490	159,190	4.9	5.2
190%	3,666,150	3,201,050	3,861,340	3,379,350	195,190	178,300	5.3	5.6
200%	3,814,920	3,331,970	4,031,840	3,529,380	216,920	197,410	5.7	5.9
210%	3,963,690	3,462,890	4,202,340	3,679,410	238,650	216,520	6.0	6.3
220%	4,112,470	3,593,820	4,372,820	3,829,450	260,350	235,630	6.3	6.6
230%	4,261,250	3,724,740	4,543,320	3,979,480	282,070	254,740	6.6	6.8

※ 인천지부 분담금 적용현황 [경영성과요율 : 일반 - 7%, 특별조치: 책임 - 15%, 일반 - 5%]

바. 2종 [위험물]

특별요율 : 130% => 125%

(대물보상한도 1억원 기준 / 단위 : 원, %)

요율	현 행		조 정		차 이			
	공제기본	인천지부	공제기본	인천지부	금액		율	
					공제	인천	공제	인천
60%	1,470,690	1,279,090	1,466,100	1,278,980	△4,590	△110	-0.3	-
70%	1,715,800	1,492,280	1,710,450	1,492,140	△5,350	△140	-0.3	-
80%	1,960,910	1,705,460	1,954,800	1,705,300	△6,110	△160	-0.3	-
90%	2,206,030	1,918,650	2,199,150	1,918,470	△6,880	△180	-0.3	-
100%	2,451,140	2,131,830	2,443,500	2,131,630	△7,640	△200	-0.3	-
110%	2,612,310	2,273,670	2,625,650	2,291,920	13,340	18,250	0.5	0.8
120%	2,773,490	2,415,500	2,807,800	2,452,220	34,310	36,720	1.2	1.5
130%	2,934,660	2,557,340	2,989,950	2,612,510	55,290	55,170	1.9	2.2
140%	3,095,830	2,699,170	3,172,100	2,772,800	76,270	73,630	2.5	2.7
150%	3,257,020	2,841,010	3,354,250	2,933,100	97,230	92,090	3.0	3.2
160%	3,418,190	2,982,830	3,536,400	3,093,390	118,210	110,560	3.5	3.7
170%	3,579,360	3,124,670	3,718,550	3,253,680	139,190	129,010	3.9	4.1
180%	3,740,710	3,266,500	3,900,700	3,413,970	160,170	147,470	4.3	4.5
190%	3,901,710	3,408,340	4,082,850	3,574,270	181,140	165,930	4.6	4.9
200%	4,062,880	3,550,170	4,265,000	3,734,560	202,120	184,390	5.0	5.2
210%	4,224,050	3,692,010	4,447,150	3,894,850	223,100	202,840	5.3	5.5
220%	4,385,230	3,833,840	4,629,300	4,055,150	244,070	221,310	5.6	5.8
230%	4,546,400	3,975,680	4,811,450	4,215,440	265,050	239,760	5.8	6.0

※ 인천지부 분담금 적용현황 [경영성과요율 : 일반 - 7%, 특별조치: 책임 - 15%, 일반 - 5%]